

부산인권정책포럼 제10차 포럼

2022

부산의 인권 5대 과제

2022.04.20.(수) 15:00

부산광역시 의회 2층 대회의실

|| 주 최 ||

부산인권정책포럼, 인권도시부산(부산광역시 의원연구모임),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 부산광역시 인권센터

진행

시 간	세부내용	진행자
15:00~15:10 (10')	개 회	사회 / 최진경,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 위원
	여는 인사	정귀순,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축 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병진,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 • 도용희, 부산광역시 시의원 • 노기섭, 부산광역시 시의원
15:10~15:40 (30')	기조발제	좌장 / 정귀순,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 부산의 인권 5대 과제 / 김경일, 사회복지연대 사무국장(부산광역시 인권위원) - 과제1 : 인권행정체계구축의 성과와 과제 - 과제2 : 형제복지원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지원방안 - 과제3 : 부산시민의 존엄한 죽음을 위하여 - 과제4 : 돌봄이용자와 돌봄노동자의 돌봄기본권 보장 - 과제5 : 의료안전망 지원 체계강화방안
15:40~16:10 (30')	토론발제 (3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영아, 부산광역시 시의원 • 이선아,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국장 • 손헌일, 부산연구원 사회·문화연구실 실장 • 박용민, 부산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
16:10~16:30 (20')	질의 및 응답	발제자 및 참석자 (사전질문 취합)
16:30	마무리	폐회 및 사진촬영

목 차

• 발제문 : 2022 부산의 인권 5대 과제 / 김경일, 사회복지연대 사무국장	3
• 토론문	
· 인권도시 부산을 위한 과제 / 손헌일, 부산연구원 사회·문화연구실 실장	15
· 2022 부산의 5대 인권과제 검토 / 박용민, 부산광역시 인권센터 센터장	19
• 참고자료	
1. 부산광역시 인권기본조례	24
2.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35
3. 부산광역시 공영장례조례	38
• 부산인권정책포럼 소개	41

<부산인권정책포럼 제10차 포럼>

2022

부산인권 5대 과제



 사회복지연대

2021년은 어땠을까?

* 부산광역시 인권기본조례 개정

-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 권고기능 추가. 제1호 "형제복지원 피해자 명예회복과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 권고" 발표
- 부산광역시 인권센터 설치
- 인권보호관 배치, 인권침해구제위원회 활동
- 부산시의회, 포스트코로나시대 안전취약계층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연구

인권정책&행정이 이전보다 두터워지고, COVID-19 대유행에 따른 각 분야별 인권운동이 활발했던 시간들

 사회복지연대

1. 인권행정체계구축의 성과와 과제

부산시의 인권행정체계 구축의 성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해볼 수 있음

- 1) 부산시 인권센터 설립
- 2) 인권보호관 및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구성
- 3) 인권정책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부서별 협의
- 4) 부산시 인권위원회의 권고기능 추가
- 5) 인권단체 및 구군, 타 시도와의 네트워크 활동

하지만 체계가 구축되었는 것과 그 체계가 올바르게 작동한다는 것은 동일한 의미가 아님. 체계를 구축했다는 것이 완결이 아닌 시작단계로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함



1. 인권행정체계구축의 성과와 과제

1) 부산광역시 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현재 설치 운영중인 부산시 인권센터는 조례상에 설치 의무와 업무에 대한 큰 틀에서의 운영사항만 규정되어 있을 뿐 세부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 한편으로 자율성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으나 조례상에 근거가 부족한 것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지점임.
-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조례상 명시하여 일종의 표준화 된 인권센터 운영 근거를 만들어야 함. 이외에도 근거와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 뿐만 아니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지역 특화 사업들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 또한 조례 제정을 통해 시도될 수 있음.



1. 인권행정체계구축의 성과와 과제

2) 인권정책협의회 상설 운영

- 부산광역시 인권기본조례 제10조에 따라 관계기관 협조요청이 가능함. 하지만 가능하다는 것과 상설 협의체, 회의기구 있다는 것은 다른 의미임. 현재의 인권위원회 및 인권부서의 위상으로 타 부서의 협력을 이끌어 낸다는 것은 많은 에너지를 투여할 수 밖에 없음. 타 분야의 기본계획 이행점검의 경우도 연차별 진행상황 점검과 연구기관의 지원과 상담, 관계 기관 간담회 등 계획 이행을 위한 과정들을 토대로 진행 중에 있음.
- 인권정책도 마찬가지로 각 부서별 협의 및 관계 기관 특히 인권센터 정책팀, 인권위원회, 인권단체와의 협의회를 구성해 이를 상시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가 구성될 필요가 있음. 인권은 특정 부서에만 밀집된 과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산시청 전반에 아우를 수 있게 되려면 그에 맞는 위상과 사전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1. 인권행정체계구축의 성과와 과제

3)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의 권한 강화

- 2021년 7월 부산광역시 인권기본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부산시 인권위원회의 권고기능이 추가될 수 있음. 이러한 지점은 권한이 강화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권고 수준의 권한으로는 정책과 실태를 진단하는 이상의 개선효과를 만들어 내기에는 한계가 분명함. 현재까지 두 차례 정책권고가 있은지 모르나 아직까지 협의 중이거나 이행되고 있지 않은 사항들도 있는 것으로 볼 때 실제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가 인권정책과 행정을 견인 또는 협력하기 위해 권한이 강화되는 것이 필요함. 실제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장치 또는 인권관련 부서의 조직개편 나아가서는 합의제 행정기구로의 변화를 비전으로 모색해 볼 수 있음. 당장 무엇을 어떻게 개혁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현재 권고한(또는 할 수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실제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며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 될 것 기대함



2. 형제복지원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지원방안

2021년 3월, 기장군 실로암의 집 자료 이관

2021년 5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 시작

그 이후 진화위 조사 진행을 기다리고 있어야만 하는가?



2. 형제복지원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지원방안

2021년 8월 31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명예회복과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 권고”

2.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종합지원센터> 운영을 강화할 것

가.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조속하게 제정할 것

나. 부산광역시는 시비 뿐 아니라 국가의 책임을 담보하는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국비를 유치하여 전담인력 증원 등 피해자종합지원센터 운영을 강화할 것

다. 피해자 및 유가족 확인, 자료 발굴, 진상규명을 위한 전문팀을 구성할 것

라. 지원사업팀을 구성하여, 피해자들의 어려운 생활환경 및 건강상태에 따른 긴급지원, 복지지원, 의료지원, 기술훈련 등을 제공할 것

마. 심리상담 및 트라우마 치료 전문역량을 갖추어 피해자에게 직접 지원할 것

바. 위 다~마 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구·군 산하기관과 공공자원연계 및 민간자원연계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

사. 피해자들의 자조모임, 집단상담 등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할 것



2. 형제복지원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지원방안

1)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 부산시 직영 구조인 종합지원센터는 운영 과정에 시민사회, 피해자,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없는 단독적인 의사결정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기부, 사회공헌 등 민간자원을 활용하는데 불가능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 설치 당시부터 계속 제기되어 왔던 문제로써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지원을 토대로 센터 운영을 강화해야 함
- 또한, 단순 상담이나 프로그램 진행방식을 지양하고 긴급사례관리, 자조모임 활성화 등을 위해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배치 및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부산사회공헌정보센터 등과의 협력체계 강화가 필요함. 00명 구조로 볼 것이 아니라 필수 인력을 배치 할 수 있도록 확대 개편 또한 필요함.



2. 형제복지원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지원방안

2)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 현재의 형제복지원 피해자 지원조례는 신고접수 및 심리상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다른 생활상의 어려움, 특히 건강상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지원사업의 근거가 없음. 최소 피해자들의 의료지원을 지원사업에 추가하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며 부산시는 부산시 내에 공공의료기관 또는 협력의료기관, 별도의 기금조성과 위탁진료 등의 방식을 도입해 의료비 지원에 가장 서둘러 역량을 투입해야 함
- 특히,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의 경우 구강보건의 어려움을 가장 많이 호소하고 있으며 비용부담으로 가장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지원조례 개정으로 현재 부산에 시행중인 아동치과주치의제와 같은 모델을 구축해 볼 수 있음. 부산시치과의사회 및 보건소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꼭 공공병원이 아니더라도 치과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고 부산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도해 볼 수 있음. 외에 임플란트, 의치 등 고액의 진료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협의 필요



3. 부산시민의 존엄한 죽음을 위하여

2021년 12월 29일 제정, 2022년 6월 30일 시행

“부산광역시 공영장례 조례”

“공영장례”란 제5조에서 정하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는 장례비를 포함하여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제7조에서 정한 지원으로 연고자 등이 비소를 마련하고 장례식 등을 포함한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장례를 말한다.(조례 제2조정의)

* 공영장례의 핵심은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을 위한 ‘시간’과 ‘공간’을 공공에서 보장하는 것



3. 부산시민의 존엄한 죽음을 위하여

1) 조례 통합

- 현재 장사 업무는 지자체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연고가 없거나 혹은 시신인도를 포기하여 무연고자로 분류되는 경우 각 구·군에서 계약한 의전업체가 시신을 처리하고 있음. 16개 구·군 중 동구 등 5개 지자체가 ‘공영장례’를 사업화한 조례를 시행 중이나 장례 비용만 200% 지원할 뿐 신청제도에 머물러 있으며 부산시의 조례와는 차이점이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정리가 필요함. 서울의 경우 광역시 조례로 통합하였음

2) 공영장례지원 상담센터 설치

- 시장은 공영장례 서비스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제12조 상담)에 따라 상담센터를 두게 되어 있으나 그 역할과 기능이 조례상에 미흡한 부분이 있고 현재 부산시는 설치계획이 없는 상황임. 장례를 앞둔 시민에서부터 공영장례를 집행할 읍면동·구·군·광역시 의 행정기관과의 연계 등을 위해선 상담센터 설치가 반드시 필요함



3. 부산시민의 존엄한 죽음을 위하여

3) 공영장례전용빈소 마련

- 영락공원의 빈소 또는 부산의료원 장례식장과 같이 현재 공공에서 활용 가능한 자원 중에서 공영장례 전용빈소를 마련하거나 민간장례식장에서 협력 장례식장을 마련해 전용빈소를 확보해야 함. 단순히 그동안 해왔던 시신처리 가 아니라 애도할 수 있는 시간, 즉 장례를 치른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장례에 기반이 되는 전용빈소는 부산시가 반드시 확보해야 함
- 외에도 공영장례 매뉴얼 수립 및 장사업무 관계공무원 교육, 의전업체 선정 방식 등 안정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한 공영장례 서비스의 전달체계가 구축되는 것이 필요함



4. 돌봄이용자와 돌봄노동자의 돌봄기본권 보장

(뼈아픈 부산사회서비스원 설립의 연가실패?)

- COVID-19으로 인해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사회적 돌봄,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였음. 그러한 와중에 돌봄에 대한 수요를 기존의 사회복지, 사회서비스 체계 안에서 해결했던 시민들에게 그 무게가 전가되는 현상이 발생했고 '가족으로의 회귀'가 일어났음. 돌봄 정책이 사실상 역행하며 2020년 당시 돌봄 공백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하였음
- 또한 돌봄 노동은 필수 노동임에 따라 감염에 노출된 상황에도 중단할 수 없는 공적 특성이 있음. 이러한 환경 속에서 돌봄노동자들은 다른 지원책 없이 개인 또는 기관의 몫으로 안전을 유지하며(한때는 정기적인 검사) 돌봄 현장을 지켜 왔음. 돌봄 정책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과 그 노동자로부터 생산되고 전달되는 것이나 부산은 공적 돌봄 체계가 그동안 채워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오고 있음



4. 돌봄이용자와 돌봄노동자의 돌봄기본권 보장

1) 부산광역시 돌봄기본조례 제정

- 민간위탁 또는 민간사업자를 통해 제공되는 사회복지, 사회서비스는 예산 등으로 인해 공적 성격을 띄지만 민간의 영역이기 때문에 '책임성'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함. 재난상황 등과 같이 돌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이에 사회가 대처해야할 때 그 책임과 역할을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음.
- 가령, "모든 부산시민에게는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다.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 돌봄을 보장하지 못한 책임은 시장에게 있다" 와 같은 구호에서 시작해 특별히 돌봄이 필요한 사회 구성원은 누구인지, 실태조사는 어떻게 하고 부서간 협력을 위해 위원회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등 돌봄 정책이 파편화 된 것이 아닌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특히 재난 상황에서) 하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함. 요약하자면 시민의 돌봄권, 시장의 책임성, 민관협력, 돌봄노동자의 노동권으로 표현해볼 수 있음



4. 돌봄이용자와 돌봄노동자의 돌봄기본권 보장

2) 부산사회서비스원 설립

- 결국, 감염의 위험에 노출된 시민이더라도 돌봄이 필요하면 책임지고 누군가는 그 현장에 가야함. 홈리스와 같은 주거취약계층에서부터 스스로 영양 및 복약관리 등의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아동, 장애인, 노인 등에게는 돌봄이 제공되어야 함. 그것이 기존의 바우처 방식에 따라 시간이 몇이고, 이용요금이 얼마인지로 접근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결국 '돈보다 생명'의 가치로 사회적 돌봄을 투입하는 수 밖에 없음.
- 이를 위해 공공에서 직접 돌봄 노동자를 고용하여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원 모델이 시도되어 볼 수 있음. 이는 꼭 감염병 유행 상황이 아니더라도 시장화되어 있고 개인의 관리 영역으로 치부되고 있는 현재의 돌봄 체계의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임.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인식이 다를 수도 있으나 사회서비스원과 같은 공적 돌봄 제공 체계가 있어야 한다는 구조의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4. 돌봄이용자와 돌봄노동자의 돌봄기본권 보장

3) 부산광역시 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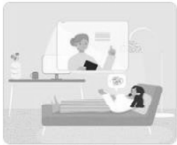
- 경상남도의 경우 2019년도 제정된 조례에 의해 2021년 센터를 설치, 돌봄노동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돌봄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돌봄노동자는 누가 돌보나요?

우리 사회를 유지해주는 노동이지만 사랑과 희생, 봉사라는 숭고한 단어에 가려져 온전한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돌봄 노동. 우리 모두 돌봄 노동을 다시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사회의 돌봄노동자는?



장기요양요원



아이돌보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요양보호사



노인맞춤돌봄 생활지원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사회서비스제공자

* 경상남도 동부권 돌봄노동자 지원센터 홈페이지



5. 의료안전망 지원 체계강화방안

부산시 공공보건의료벨트 속 시립의원은 어디로 갔을까?

유일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 이주민의료통번역 사업

- 부산 유일의 지방의료원인 부산의료원이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발생한 의료공백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음. 최근 보건복지부는 모든 의료급여 기관에서 노숙인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으나 실제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이마저도 2년이 지난 뒤에서야 발표되겠음. 노숙인 외에 법적으로 '취약계층'이라고 따로 명명되지 않은 사람들을 지원하는 의료안전망의 개념은 현재 찾아 볼 수 없음



5. 의료안전망 지원 체계강화방안

1) 부산광역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현재 서울시를 제외하고 안전망병원 제도를 운영하는 곳은 없음. 하지만 수도권 지역은 공공병원의 수가 부산보다 많으며 외에도 무료진료소 등의 안전망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자원이 존재함. 부산은 부산의료원 외에 다른 기관이 전무한 상황이므로 새로 설립될 공공병원에 안전망 기능을 강화하는 것 외에도 추가적으로 안전망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해당 조례를 통해 민간병원 중 공적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또 지원하여 안전망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5. 의료안전망 지원 체계강화방안

2) 이주민 의료통번역센터 설치

현재 시행중인 이주민의료통번역사업은 보조사업의 성격으로 보건복지부의 외국인노동자 등 소외계층 의료지원 사업의 하위 사업처럼 분류되어 있음. 통번역활동가 양성, 전화상담 및 파견 조정 등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나 구조가 없는 상태로 사실상(사)이주민과함께 사무국이 무료노동을 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개정이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등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이주민 의료통번역센터 설치를 의무화 하고 전문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시민사회가 유지해온 사업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언어는 기본권이므로 의료안전망 체계에 자연스럽게 포함되어야하는 필수 사업으로 해석됨



감사합니다

 **사회복지정책연구소**

토 론 문

인권도시 부산을 위한 과제

손헌일, 부산연구원 사회·문화연구실 실장

□ 부산시 인권정책의 성과

- 도시는 사회권이나 일상생활에 밀접한 권리 등을 실현하는 실질적인 장소로서 지역 내 다양한 자원을 결합하여 인권과 관련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도시는 시민들의 직접적인 생활공간이기 때문에 인권문제의 발생 원인을 이해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데 있어 보다 미시적인 접근이 가능(김근혜 외, 2014)
-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가 제약되는 공간도 도시라는 공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도시의 보편적 인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은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
 - 2012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인권기본조례 제·개정을 권고한 이후 지방정부 차원의 인권기본계획수립, 인권위원회 구성 등 다양한 인권제도가 마련
 - 인권행정부서의 설치를 통한 인권업무 수행(경기도, 충남, 광주광역시 등)
- 부산시는 인권의 제도화를 위해 2012년 2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시민의 인권보장과 그 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부산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
 - 사회여건과 부산시정의 변화에 따라 관련 조례는 13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짐
 - 제1차 인권기본계획이 수립(2015년)
 - 인권위원회 구성(2021년)
- 2019년 부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로 변경된 이후 부산시는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부산시 역할이 구체화되었고, 주요 인권 정책이 실행
 - 인권 관련 제도 실행(시민인권모니터링단, 인권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 강화)
 - 인권전담 부서의 설치
 - 인권 관련 중간지원 조직 설치
 - 인권보호관 운영

<부산시 인권 관련 주요 정책>

부산시 인권 관련 주요 정책	주요 실행 내용
시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2차 기본계획 수립('20년 9월)
실태조사 및 보고서 발간	미실행 (부산시 인권의식 조사로 실시)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 설치·운영	권고 기능 신설 인권위원회 첫 권고('21년 8월)
'부산광역시 인권센터' 설치·운영	개소('21년 12월)
시민인권모니터링단 구성·운영	1기 모니터링단 구성('19년) 현재 2기 운영 중
시민인권헌장 제정 및 선포	미실행
인권영향평가의 실시	부산시 및 지자체 평가('22년 예정)
인권보호관	1명(확대 필요) - 조례에 최소 3명(인권보호팀 신설)

□ 부산시 인권정책 고도화를 위한 향후 과제

○ 인권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이 강화될 필요

- 부산시의 인권행정 업무는 인권노동정책담당관실 소속 인권증진팀에서 담당
- 인권증진팀이 부서 총괄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권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은 5~6명 정도이며, 인권보호관도 1명으로 부족한 상황
- 제2차 부산시 인권정책 기본계획(2020~2024년)에 제시된 인권보호팀과 인권영향평가팀으로 인권 행정 추진체계 개편 제시한 바와 같이 2~3개 팀으로 구성된 과 수준으로 격상을 통해 인권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 조성이 필요
- 전문성과 독립적인 권한을 가진 인권보호관 확충이 필요

○ 인권전담부서의 독립성이 필요

- 지자체 행정과 관련해 발생한 인권침해를 구제하고, 지자체 행정이 시민들의 인권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독립성이 중요(노정환, 2021)
- 경기도와 같이 인권담당관실을 부시장 직속으로 두거나 광주광역시 사례처럼 조직 구조상 약화된 독립성을 보완하기 위해 시장 방침을 받아 인권침해 사건조사 결재는 상임 인권옴부즈맨이 전결하여 위원회에 상정하는 방식 등
- 부산시 인권전담 조직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방안에 관한 공론화가 지속될 필요

○ 인권전담조직 구성원의 전문성 확보

- 부산시 인권업무의 전문성을 위해 (전문성을 확보한) 인력 충원이 필요
- 인권 및 노동정책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관련 업무의 전문성 확보의 어려움
- 인권노동정책담당관실 설치('19년 1월) 이후 총 4명의 담당 과장을 맞이함 (평균 1년 이상 근무하지 않았음)

<인권증진팀 담당자별 주요 업무>

인권증진팀장	○ 인권증진업무 총괄
주무관(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 업무보고(시의회 업무보고 포함) ○ 국·과 직원 인사, 근무평정, 구상사업에 관한 사항 ○ 당면 지시(현안)사항 처리, 언론 대응 ○ 민생노동정책관실 공적심의위원회 운영 ○ 부마민주항쟁기념식 개최에 관한 사항 ○ 민주화운동기념 및 정신계승위원회 운영
주무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민주공원 부속건물 건립 ○ 민주주의 역사기념관 건립 용역 ○ 민주공원 운영에 관한 사항(국·시비 보조사업 포함) ○ 민주화운동기념 및 정신계승위원회 운영 ○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지원 ○ 부마민주항쟁기념식 개최에 관한 사항
주무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 예산, 각종 회의자료 작성 등
주무관(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제복지원 피해자 지원 및 진상규명(조사지원)에 관한 사항 ○ 진상규명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피해자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 형제복지원 관련 민원처리(전화, 서식, 상담 등)
주무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 의회, 행정사무감사, 국정감사 ○ 민주화운동기본계획 수립 등
주무관(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교육, 인권정책과제 이행평가, 차별적행정용어 개선 등
주무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서무, 회계 등
주무관(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인권보호관(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보호관

○ 부산시 인권기본계획의 안정적인 추진이 필요

- 기본계획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확보 필요
- 부산시는 ‘누구나 안심하고 더불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인권 도시 부산’ 을 비전으로 하는 「제2차 부산광역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을 수립('20년 9월)
-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에는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 ▲안전한 도시 ▲건강한 환경 도시

▲차이를 존중하는 문화도시 ▲더불어 행복한 도시 등 5대 정책목표와 10대 핵심과제, 26개 중요과제 등 총 100개의 인권정책과제가 담겼음

- 기본계획 이행에 대한 평가 및 사업계획 변경을 고려할 필요함. 계획에 대한 평가와 평가결과를 토대로 한 새로운 목표설정이 필요한데, 코로나 19와 같은 외부 충격이나 주요 상황 변화가 발생한 경우 ‘유연성’을 발휘하여 목표의 수정 및 새로운 목표설정도 고려
- 도시에서 중요한 권리 중 하나가 교통권임. 이동권에 관한 사항이 추가될 필요
- 인권정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적절한 예산확보가 필요

<부산시 인권정책 10대 핵심과제>

정책목표	10대 핵심과제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	① 인권센터의 설치 및 운영
안전한 도시	② 원전안전 소통협의회 운영
건강한 환경도시	③ 공공의료기관 확충
차이를 존중하는 문화도시	④ 인권주간선포 및 참여 확대
더불어 행복한 도시	⑤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협력체계 구축
	⑥ 청소년 및 청년 노동권리 보호
	⑦ 거주시설 장애인 등 탈시설 자립지원 단계적 추진
	⑧ 세대융합프로그램 지원 확대
	⑨ 이주민 거점의료기관 지정
	⑩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 확대

○ 시민인권헌장의 제정 및 선포 필요

- 헌장(憲章)은 어느 국가 혹은 기관, 단체, 비영리기구 등에서 어떠한 사실에 대해 지키려고 정한 규범임
- 부산인권헌장의 제정은 부산시가 인권을 위한 정책수립 및 활동을 위한 규범을 정하고, 공표한다는 점에서 상징적으로 중요함
- 인권 도시로서 위상을 확립하기 위한 ‘부산시민인권헌장’ 제정 필요
- 시민 참여 방식을 통한 인권헌장 제정이 필요(결과 이상으로 과정이 중요)

부산의 5대 인권과제 검토

박용민, 부산광역시 인권센터 센터장

1. 부산시 인권행정체계 구축 성과와 과제 건

■ 구축 성과

발제자는 부산시의 인권행정체계 구축의 성과를 아래와 같이 5가지로 요약함.

- 1) 부산시 인권센터 설립
- 2) 인권보호관 및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구성
- 3) 인권정책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부서별 협의
- 4) 부산시 인권위원회의 권고 기능 추가
- 5) 인권단체 및 구군, 타 시도와의 네트워크 활동

① 현재 부산광역시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는 작년 12월 개소 이후 6명(센터장, 팀장2인, 팀원3인)의 구성원으로 2022년부터 5개 인권 사업 분야 (교육, 정책, 옹호/상담, 문화, 홍보)에 걸쳐 진행하고 있음. 부산 형제복지원 기억캠페인을 비롯하여 공공 분야(공무원) 인권교육과 시민인권모니터단 사업 등 부산시와 협력을 토대로 지역사회에 필요한 활동을 모색하고 있음. 다만 민간 분야에서 필요한 사안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협력 사업이 요청됨

② 인권보호관의 경우, 21년 9월 인권보호관이 임용된 이후, 22년 2월 기준으로 4건의 사건이 처리되는 (접수1, 조사개시3, 결정통지1) 등 활성화된다고 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서 시정권고를 하는 등 향후 본격적인 활동이 기대되며,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부산시는 하반기에 인권보호관 1인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함

③ 인권정책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부서별 협의는, 아래 조례에 근거함.

부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 제10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지난 2012년 부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이하, 인권조례)를 만들 때부터 규정되어 있었으나, 사실상 운영되진 않았음. 그러다가 지난 3기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정귀순 위원장, 이하 3기 인권위원회)에서부터 해당 조항을 근거로 부서별 인권정책협의회를 운영, 인권과제 담당 부서(팀장, 담당자)와 인권위원회 위원 등이 참여하여 6회에 걸쳐 진행되었음. 협의 결과, 16개 부서의 총 31개 과제에 대한 개선 사항을 도출하였음

④ 지난 21년 7월 인권위원회의 권고 기능을 담은 인권조례가 개정되었음.

제5조(인권위원회의 설치) ② 위원회는 시의 자치법규, 정책 등이 시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3기 인권위원회는 지난 21년 8월, 「형제복지원 피해자 명예회복과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 권고」 안을 1호로 진행하였고 22년 1월에는 「‘부산광역시 홈리스 인권보장’을 위한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 권고」 안을 2호로 추진하였음. 현재 3호로서 이동 약자 등 장애인의 이동권 및 보행권 지원 방안을 주제로 준비 중임.

3·4번의 성과에는 3·4기 인권위원회 정귀순 위원장의 추진력과 인권위원들의 능동적인 참여, 부산시의 인권위원회 담당 행정부서의 적극적인 협력 등이 바탕이 되었음. 이후에도 정책협의회와 권고 기능이 유지·활성화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이후 과제에서 좀 더 살펴보기로 함.

⑤ 인권단체 및 구군, 타 시도와의 네트워크 활동의 경우, 현재까지 성과로 말할 수 있는 바가 많지 않음. 이는, 올해부터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산인권센터가 지역사회에서 얼마나 역할을 할 것인가에 따라 가늠될 수 있으리라 여겨짐. 다만, 5월부터 부산시 차원에서 구군 인권 워크숍을 개최하고, 부산인권센터에서도 부산지역 전문가 풀을 확보하여 구 군이 필요로 하는 인권 전문가 연결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

이상, 발제자가 제시한 5가지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음. 지금부터 향후 과제로서 제시된 3가지를 간략하게 검토해보고자 함.

■ 향후 과제

1) 부산광역시 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인권센터의 세부적 운영과 지원 사안 및 지역 특화 사업 모색 차원에서 필요함

현재 인권센터는 인권조례 제14조(부산광역시 인권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음. 이에 발제자는 세부적 운영, 예를 들자면 운영위원회 구성이나 예산 지원에 관한 사안, 혹은 지역 특성화 사업 기획 시 필요한 근거 차원에서 조례 설치 필요성을 제시함. 인권센터에서 활동하는 당사자로서 발제자의 문제의식에 대체로 동의하며, 이후 진행할 예정임

2) 인권정책협의회 상설 운영

: 부산시 부서별 협의 및 관계 기관 (인권센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단체)와의 협의회를 구성해 상시적 논의 구조 필요함

언급한 바대로 인권정책협의회는 3기 인권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비로소 작동하였던 만큼 인권위원회 구성 변경은 이후에도 반복하는 것이기에 구조적 차원에서 인권정책협의회가 진행될 필요성을 제시함. 2022년 부산시 계획에 따르면 인권정책 이행 실효성을 위해서 인권정책협의회의 강화를 모색하는바, 상반기는 인권정책과제 추진계획 협의를, 하반기는 중요과제 중심의 이행실적 점검·논의를 추진 예정임. 이는, 지난 21년 인권정책협의회에서 좀 더 발전(21년은 1회로 진행하고 운영 방식도 부서 순으로 진행한 반면, 22년은 상하반기 2회로 늘어났고 연관성 높은 정책과제에 대한 부서 간 협의회 진행 예정)되었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이는 인권위원회 차원의 참여만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으며, 또한, 타 부서의 적극적인 협력을 끌어내는 구조적 차원의 인권정책협의회로서 운영의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인권조례에 인권정책협의회 항목을 새롭게 삽입하거나 혹은 인권위원회 아닌 다른 유관 기관도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통해 부산시 인권 사안을 전반적으로 다룰 수 있는 장으로서 인권정책협의회를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3)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의 권한 강화

: 좀 더 실질적인 인권정책과 행정과의 협력을 위해 합의제 행정기구로의 변화 필요함

조례 개정을 통해 부산시에 대한 권고 기능 삽입으로 인권위원회의 권한이 보완되었고, 두 차례의 권고가 이루어졌음. 이에 따라 부산시에서는 해당 부서에서 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른 대응책을 발표하는 등 소정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으나, 충분한 개선 효과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인권위원회의 인권정책과 행정에 좀 더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이에 따른 권한 강화가 필요하며, 그에 대한 방안으로서 합의제 행정기구로의 성격 전환이 제기됨. 인권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구로써 구성한다면 행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선 토론자도 정확하게 알지 못함. 다만 현재 부산시의 유일한 합의제 행정기구인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두고 볼 때, 좀 더 실질적

인 행정력을 가질 수 있을듯함

2. 형제복지원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지원 방안 건

발제자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 방안으로서 피해자 종합지원센터의 확대 개편을 위한 조례 제정과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제시함

부산시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지원 계획으로서 피해자 종합지원센터 프로그램 확대, 생활안정시책 발굴·추진, 피해자 입증 지원, 지원근거 법령 마련 및 명예회복사업 등 4개 과제 16개 사업을 추진 예정임. 이는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의 1호 권고 및 조례에 근거한 과제로서 현재 진행되는 사업의 확대도 있으며, 신설 추진 사업도 있음. 한편 형제복지원 입퇴소 관련 자료 추가발굴조차 차원에서 부산시는 피해자와 합동으로 7개소의 시설에서 286명의 인명 자료를 확보하기도 했음

부산시에서 파악한 현재 형제복지원 피해자의 경우, 추정 인원은 38,437명이나 22년 2월 기준으로 부산시에 접수된 인원은 438명으로서 그 중 부산지역에는 218명이 거주하고 있음. (진화위 진실규명 신청자의 경우 501명) 438명 중 무직이 43%(190명), 취업 31%(136명), 기타 26%(112명)임을 고려한다면, 형제복지원에서 경험한 학대로 인해 일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웠음을 추정할 수 있음. 게다가 피해신고접수자 중 438명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39명(32%)으로 생계환경이 열악한 상황임

그러나 이러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유일한 기구인 피해자 종합지원센터 뚜껑 뚜껑은 현재 운영 예산이 1억 5백여만 원에 불과하여 몇몇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으로 그치고 있음. 따라서 실질적으로 피해자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확충을 통한 센터 확대 개편과 발제자의 주장처럼 이들의 살아가고 있는 현실적 삶에 주목하여 사업 방안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부산시에서도 개인별 통합사례관리체계 구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기에 이러한 사업 추진이 실질성을 갖도록 하기 위한 지원이 요청됨. 이를 통해 국가 배·보상 시까지의 지원 공백을 그나마 메울 수 있으리라 판단함

그리고 현재 피해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이 생계와 의료임을 고려한다면, 생계의 경우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 여의치 않다면 의료비 지원이라도 부산시 차원에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올해부터 부산시는 1억 원의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1인당 최대 5백만 원 한도 내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예정임. 발제자의 주장처럼, 형제복

지원 사건 피해자 다수가 구강보건의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다면, 이에 따른 수요조사와 더불어 민간 자원과의 협력을 통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 있음.

이 외에도, 형제복지원 사건 자체에 대한 부산시의 의제 활동이 요청됨. 이와 관련하여 형제복지원 사건 자체를 기억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이 필요함. 현재 부산광역시 인권센터는 형제복지원 기억캠페인이란 주제로 피해자 38,437명의 부산시민의 서명을 받아 부산시에 전달할 계획으로 지난 3월부터 온-오프라인으로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음. 다수 언론 매체에서 형제복지원 사건을 다루기는 했으나, 아직 많은 부산시민이 형제복지원 사건을 잘 알지 못함. 따라서 부산시민들에게 인권교육의 현장으로서, 한편으로는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공간으로서 형제복지원 사건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기억 공간이 필요함.

부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

- (제정) 2012-02-22 조례 제 4731호
- (일부개정) 2013-07-10 조례 제 4881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일부개정) 2014-03-19 조례 제 5003호
- (일부개정) 2015-01-01 조례 제 5078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일부개정) 2015-01-01 조례 제 5081호 (보조금 관리 조례)
- (일부개정) 2015-02-25 조례 제 5098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일부개정) 2018-08-01 조례 제 5793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일부개정) 2019-01-01 조례 제 5832호
- (일부개정) 2019-01-09 조례 제 5848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일부개정) 2019-07-10 조례 제 5934호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일부개정) 2020-01-01 조례 제 6057호
- (일부개정) 2021-07-07 조례 제 6410호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일부개정) 2021-07-14 조례 제 6435호

제1장 총칙 <장 제목 신설 2020. 1.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조성하여 인권도시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 1. 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시민”이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 체류하고 있는 사람과 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인권도시”란 시민의 인권이 생활 속에서 실현되며, 시민 스스로 도시 구성원으로서 행복한 공동체를 구현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9. 1. 1]

제2조의2(기본원칙) 시민의 인권은 존중되고 보호 받아야 하며, 모든 시민은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제1항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대우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 1]

제3조(시의 책무) ① 시는 시민의 인권 보장과 증진 및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1>

② 시가 인권침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관계 기관에 그 사항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시민의 인권과 관련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

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 1. 1]

제2장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장 제목 신설 2020. 1. 1.>

제4조(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4. 3. 19>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기본 방향
2. 여성, 아동, 노인 등 인권취약계층의 분야별 추진목표 및 전략
3. 시민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시책
4.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 시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신설 2014. 3. 19>

제4조의2(실태조사 및 보고서 발간)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일반적인 실태뿐만 아니라 시 및 구·군의 자치법규와 지침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의 결과에 따라 해당 구·군 또는 관련 기관에 개선 또는 자치법규·지침의 제정·개정·폐지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였을 경우 그 결과를 보고서로 발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3. 19]

제3장 부산광역시인권위원회 <장 제목 신설 2020. 1. 1.>

제5조(인권위원회의 설치<개정 2019. 1. 1.>)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4. 3. 19, 2019. 1. 1, 2021. 7. 14.>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2014. 3. 19>
2. 인권 보장 및 증진 실천과제의 발굴에 관한 사항
3. 인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신설 2019. 1. 1>
5. 제1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인권센터의 운영 자문에 관한 사항
6. 시민 인권현장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신설 2019. 1. 1>
7. 그 밖에 인권의 보장 및 증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시의 자치법규, 정책 등이 시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신설 2021. 7. 14.>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경우 그 권고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1. 7. 14.>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9. 1. 1>

③ 위원회의 위원은 민생노동정책관, 사회복지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3. 7. 10, 2015. 1. 1, 2015. 2. 25, 2018. 8. 1, 2019. 1. 1, 2019. 1. 9, 2019. 7. 10., 2021. 7. 7.>

1.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인권에 관한 연구실적이 있는 사람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인권과 관련한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5. 인권과 관련한 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개정 2019. 1. 1>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 1. 1>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19. 1. 1>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에 개최되는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개정 2014. 3. 19>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권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2019. 1. 1>

제12조(수당 등)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 1. 1>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인권 보장 및 증진 사업의 시행 <장 제목 신설 2020. 1. 1.>

제13조의2 [중전 제13조의2는 제14조의6으로 이동 <2021. 7. 14.>

제14조(부산광역시인권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개정 2021. 7. 14.>

② 인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침해 사례의 접수·상담 및 관련 자료 수집 활동
2.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 의뢰 지원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요청에 따라 인권침해 관련 조사 및 현장지도·감독에 참여

4. 인권침해의 구제를 위한 법률구조활동 지원

5.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홍보

6. 그 밖에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업

③ 시장은 인권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인권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인권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인권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9. 1. 1>

<전문개정 2014. 3. 19>

제14조의2(시민인권모니터단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부산광역시 시민인권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2. 시에서 추진하는 인권 관련 시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

3.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에 관한 제안

4. 그 밖에 시장이 인권과 관련하여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활동

② 시장은 모니터단에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모니터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 1]

제14조의3(시민 인권헌장) 시장은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를 구현하고 지속 가능한 인권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시민 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 1]

제14조의4(교류·협력 등) ① 시장은 인권도시 구현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외국 정부, 지방자치

단체 또는 인권과 관련한 기관·단체 등과 교류하거나 협력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에 인권을 고려한 경영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 1]

제14조의5(인권 보장 및 증진 활동 지원) ① 시장은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1. 1.]

제14조의6(인권영향평가의 실시)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시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계획 등의 수립 시 필요한 경우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권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 1]

[제13조의2에서 이동 <2021. 7. 14.>]

제15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해마다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시민에게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시의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1, 2019. 1. 1>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 교육 및 홍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인권교육 교재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발굴 지원
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
3. 그 밖에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시책

④ 시장은 학생에 대한 인권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부산광역시교육감과 협의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인권의 연구·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거나 전문기관 등에 조사·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16조 삭제<2014. 3. 19>

제5장 인권 보호 및 침해의 구제 <신설 2020. 1. 1.>

제17조(인권보호관)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침해의 구제를 위하여 3명 이내의 인권보호관을 둘 수 있다.<개정 2021. 7. 14.>

1. 삭제<2021. 7. 14.>
2. 삭제<2021. 7. 14.>
3. 삭제<2021. 7. 14.>
4. 삭제<2021. 7. 14.>

② 인권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3명 이내의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한다.

1.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중 임용예정 계급에 상당하는 경력 기준을 충족한 사람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의 부교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사람 중 임용예정 계급에 상당하는 경력 기준을 충족한 사람
3. 국제기구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등의 인권 관련 부서 또는 인권 관련 직무 분야에서 임용예정 계급에 상당하는 경력 기준을 충족한 사람

[본조신설 2020. 1. 1.]

[중전 제17조는 제30조로 이동 <2020. 1. 1.>

제17조의2(인권보호관의 직무) 인권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1. 제18조에 따라 신고되거나 인지한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조사
2. 인권침해의 유형, 판단 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권고
3. 제29조에 따른 시정권고에 대한 대상기관의 이행실태의 점검
4. 그 밖에 인권 보호 및 침해의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 7. 14.]

제18조(대상기관 인권침해 상담·신고 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의 인권침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인권보호관에게 신고할 수 있고, 인권보호관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그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시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3.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4. 구·군(시가 위임한 사무와 구청장·군수가 조사를 의뢰한 사항만 해당한다)
 5. 시의 사무를 위탁 받은 민간수탁기관
 6. 시의 보조금을 지원 받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권보호관이 따로 조사하지 아니한다.
1.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이나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사항
 2.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사항
 3.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한 사항
 4. 신고가 현저하게 이유가 없거나 허위의 사실에 기반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
 5. 그 밖에 인권 보호 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졌음이 명백한 경우
-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신고자 및 피해자의 보호 방법, 인권침해 사건의 처리 절차·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 1.]

[중전 제18조는 제31조로 이동 <2020. 1. 1.>

제19조(인권보호관제도 홍보) ① 시장은 시본청 및 소속기관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인권보호관제도를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 외의 대상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인권보호관제도를 알리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비치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 1.]

제20조(시민인권침해 구제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의결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

결하기 위하여 시민인권침해 구제위원회(이하 “구제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인권보호관이 조사하여 회부한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 판단에 관한 사항
2. 인권 보호 및 침해의 구제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 발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권 보호 및 침해의 구제를 위하여 구제위원회의 위원장(이하 “구제위원장” 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20. 1. 1.]

[제목개정 2021. 7. 14.]

[제21조에서 이동 <2021. 7. 14.>]

제21조(구제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구제위원회는 구제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구제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구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 이상으로 있었던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었던 기간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사람

3.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기간이 10년 이상이며 그 가운데 감사·조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4. 인권 관련 국제기구나 비영리 법인·단체에서 근무 또는 활동한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으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구제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 1.]

[제22조에서 이동 <2021. 7. 14.>]

제2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0. 1. 1.]

[제23조에서 이동 <2021. 7. 14.>]

제2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구제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구제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제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구제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 1.]

[제24조에서 이동 <2021. 7. 14.>

제24조(구제위원장의 직무) ① 구제위원장은 구제위원회를 대표하고, 구제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구제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구제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0. 1. 1.]

[제25조에서 이동 <2021. 7. 14.>

제25조(구제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등) ① 구제위원장은 구제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구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구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권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④ 구제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외부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7. 14.]

[중전 제25조는 제24조로 이동 <2021. 7. 14.>

제26조(시행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구제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제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 1.]

[제29조에서 이동 <2021. 7. 14.>

제27조 삭제<2021. 7. 14.>

제28조 삭제<2021. 7. 14.>

제6장 보칙 <장 제목 신설 2020. 1. 1.>

제29조(결과 및 시정권고 통지 등) ① 시장은 제20조에 따른 시민인권침해 구제위원회가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하면 그 내용을 신고자, 피해자, 행위자 및 대상기관의 장 등 관련 당사자에게 그 결과를 문서로 통지한다. 시정권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도 함께 통지한다.<개정 2021. 7. 14.>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정권고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표가 제한되거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정권고 통지를 받은 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내용을 존중하여 조치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시정권고에 따른 조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별도로 감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고,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인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 1.]

[제20조에서 이동 <2021. 7. 14.>

제30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 및 구제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0. 1. 1.>

[제17조에서 이동 <2020. 1. 1.>

제31조(포상) 시장은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공무원 또는 기관·단체 등을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3. 19.]

[제18조에서 이동<2020. 1. 1.>]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구 설치 조례)<2013. 7. 10>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 ⑭ 생략

⑮ 부산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16) ~ (32) 생략

부칙<2014. 3. 19>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구 설치 조례)<2015. 1. 1>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 ⑮ 생략

(16) 부산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정책관, 안전행정국장, 복지건강국장”을 “여성가족관, 기획행정관, 사회복지국장”으로 한다.

(17) ~ (100) 생략

부칙(보조금 관리 조례)<2015. 1. 1>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4조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 (20) 생략

(21) 부산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한다.

(22) ~ (56) 생략

부칙(행정기구 설치 조례)<2015. 2. 25>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 ② 생략

③ 부산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관, 기획행정관, 사회복지국장” 을 “기획행정관, 사회복지국장, 여성가족국장” 으로 한다.

④ ~ (26) 생략

부칙(행정기구 설치 조례)<2018. 8. 1>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 ⑩ 생략

⑪ 부산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행정관, 사회복지국장” 을 “시민행복추진본부장, 복지건강국장” 으로 한다.

⑫ ~ (95) 생략

부칙<2019. 1. 1>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인권보장및증진위원회는 개정 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인권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19. 1. 9>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부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시민행복추진본부장” 을 “행정자치국장” 으로 한다.

② ~ (73) 생략

부칙(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9. 7. 10.>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 ⑳ 생략

㉘ 부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국장” 을 “민생노동정책관” 으로 한다.

㉙ ~ (65) 생략

부칙<2020.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21. 7. 7.>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①~㉙생략

㉚ 부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건강국장” 을 “사회복지국장” 으로 한다.
③~(79)생략

부칙<2021. 7.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부산광역시 체육인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2021.12.29.>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부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부산광역시 체육인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 제11조 각 호에 관한 사항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9-04-10 조례 제 5890호

(일부개정) 2019-07-10 조례 제 5934호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20-05-27 조례 제 614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형제복지원 사건”이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산광역시 소재 형제복지원에서 발생한 수용자에 대한 인권유린사건을 말한다.
2. “피해자”란 형제복지원 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신체적·정신적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는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피해자 및 피해 실태조사
2. 피해자 및 유족 등 관계자의 구술 기록 및 피해 사실 증거자료 수집·정리
3. 피해자 상담 및 심리 치료
4. 사회적 관심 유도를 위한 문화·학술 행사
5. 피해자 쉼터 조성 및 피해자 모임 운영 지원
6. 진상규명을 위한 입법 촉구 활동 지원
7. 그 밖에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피해자 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 기반 조성 및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개정 2020. 5. 27.>

1. 피해자 신고 접수
2. 피해자 상담 및 구술 자료 기록·정리

3. 제4조제1항에 따른 피해자 지원사업

② 센터는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296번길 3-7(초량동, 6층)에 둔다.<개정 2020. 5. 27.>

③ 시장은 피해자 상담을 위하여 센터에 전문상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 목적에 적합한 전문 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 추진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2. 피해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3. 피해자 지원 시책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 기반 조성 및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민생노동정책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9. 7. 10.>

1.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인권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전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전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권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나 형제복지원 사건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존속기한)제6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 추진위원회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부칙(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9. 7. 10.>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 ㉞ 생략

㉟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국장”을 “민생노동정책관”으로 한다.

㊱ ~ (65) 생략

부칙<2020. 5.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공영장례 조례

(제정) 2021-12-29 조례 제 653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마지막 존엄성 유지와 상부상조의 공동체적 가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제5조에서 정하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는 장례비를 포함하여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제7조에서 정한 지원으로 연고자 등이 빈소를 마련하고 장례식 등을 포함한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장례를 말한다.
2. “무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가 거부·기피된 사망자를 말한다.
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부산광역시 독거노인 지원 조례」 및 「부산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 및 장제 지원을 받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공영장례 추진 체계 구축 및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 수립) ① 시장은 공영장례를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법 제5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장사시설의 수급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공영장례의 기본 방향
2. 공영장례 수요 변동 추세와 시설 공급전망
3. 전용 빈소 확보 등 공영장례 시설 설치·구성·관리에 관한 사항
4. 공영장례 실행을 위한 지원 사업 및 재원조달 방안
5.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③ 시장은 제2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한다.

제5조(지원 대상) 지원대상자는 부산광역시 관내 사망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연고자
2. 제2조제3호에 따른 저소득층으로 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및 75세 이상 노인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원 방법) ① 공영장례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물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물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7조(지원 내용) ① 시장은 장례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인력, 물품, 장소, 차량 또는 서비스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5조의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내용, 범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 신청 및 지원 결정 등) ① 제5조제1호에 따른 무연고자는 구청장·군수가 공영장례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사망자로 결정한다.

② 제5조제2호 및 제3호의 지원대상자는 법 제2조제16호의 연고자 및 동장, 마을공동체 등 관계인의 신청을 받아 시장 또는 구청장이 결정한다.

③ 시장·구청장·군수는 제1항, 제2항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 여부가 결정된 경우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의 일부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 산하 공기업, 비영리 장례지원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민간기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과 관련한 위탁사무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공영장례 지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교육) 시장은 담당 공무원과 수탁기관, 협력기관 단체 종사자에 대해 공영장례 지원 사무처리 및 직무능력 향상에 필요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상담) 시장은 공영장례 서비스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의 보조) ① 시장은 본 조례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

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영장레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21.12.29.>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인권정책포럼

I 취지와 목적

- ‘인권도시 부산의 정책적 토대구축’
 - 인권현안 발굴
 - 인권정책 연구
 - 네트워크 구축
 - 공동사업 추진

II 경 과

- 2019년 12월 18일 발족 및 1차 포럼 ‘3인 3색, 부산의 인권을 말하다’ 개최
- 2020년 1월 6일 오거돈 부산시장께 드리는 의견서 발표
‘2020년 새해, 인권도시 부산을 위한 첫걸음은 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의 직접고용이다!’
- 2020년 1월 15일 1차 운영위원회 개최
 - 운영위원 10명 선임
 - 1~2기 운영위원 (가나다 순 / 2021년 12월 21일 제14차 운영위원회 연임 결정)
 - 김경일 사회복지연대 사무국장 (포럼 운영부위원장)
 - 박용민 부산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
 - 석병수 부산노동권익센터장
 - 송시섭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 교수
 - 오다빈 사)노동인권연대 사무처장
 - 유선경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부산울산지부
 - 이규희 사)부산인권상담센터 소장
 - 정귀순 사)이주민과함께 이사 (포럼 운영위원장)
 - 정지숙 사)이주민과함께 상임이사
 - 최진경 참교육학부모회부산지부 정책실장 (포럼 간사)

□ 2020년 5월 8일 제2차 포럼 ‘사회적 약자의 안전권,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개최

□ 2차 포럼 참석자들 공동 ‘사회적 약자의 안전권’ 확보 의견서 전달

- 2020년 5월 21일,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및 박인영 시의회의장께 의견서 전달
“평소에 할 수 없는 것은 재난 상황에도 할 수 없습니다”
— ‘재난 상황에도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인권도시 부산!’

□ 2020년 8월 25일 3차 포럼 ‘차별없는 인권도시 부산만들기’ 한일포럼 개최

□ 2020년 11월 4일 4차 포럼 ‘부산시 인권행정체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개최

□ 2020년 12월 10일 5차 포럼 ‘2020, 3인 3색 부산의 인권을 말하다’ 개최

□ 2021년 3월 16일 6차 포럼 ‘2021, 부산의 인권현안 10대 과제’ 개최

□ 2021년 6월 23일 7차 포럼 ‘부산의 인권이슈1 — 사회복지노동자의 인권현실’ 개최

□ 2021년 9월 27일 8차 포럼 ‘위드(With) 코로나시대, 사회안전망은 어떻게?’ 개최

□ 2021년 12월 8일 9차 포럼 ‘2021 부산의 인권을 기억하다!’

- 2021 부산의 인권 7대 뉴스 발표 기자회견
- 2021 3인 3색 부산의 인권을 말하다

Ⅲ 함께 하는 이들 (가나다 순 / 31개 기관 및 단체)

□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부산경남지부,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부산울산지부, 녹산이주민진료소, (사)문화복지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산지부, 부산광역시감염병관리지원단, 부산광역시공공보건의료지원단, 부산광역시 노동권익위원회, 부산노동권익센터,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부산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부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부산인권상담센터, 부산인권포럼, 부산장애인인권포럼, 부산지역공공기관노동조합협의회,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사)노동인권연대, (사)부산여성회, (사)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사)이주민과함께, 이주와인권연구소, 사회복지연대, 인권도시부산(부산광역시 의원연구모임), 이주민문화센터, 인도주의의사실천협의회 부산지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부산지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부산아동옹호센터

메 모
